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82,673,919	38,480,218
일반회계		989,923,508	29,697,705
특별회계		292,750,411	8,782,512
	공기업특별회계	214,309,251	6,429,27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0,613,000	2,418,3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3, 199, 139	1,895,97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497,112	2,114,913
	기타특별회계	78,441,160	2,353,235
	주택사업 특별회계	3,653,003	109,59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275,329	98,2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0,000	3,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349,335	100,480
	교통사업특별회계	13,513,098	405,39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2,909,087	987,27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1,641,308	649,239

- 제 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 "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23,171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4,7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